

##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3년 2월 20일  
옥 천 군 수

### 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### 2. 제정 이유

- 옥천군 주요 정책 및 미래 발전 전략의 방향성 등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,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### 3. 주요 골자

- 위원회의 목적,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- 위원회 구성(60여 명) 및 위원의 임기(2년)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및 제4조)
-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및 제6조)
-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부터 제9조)
- 특별분과위원회(비상설위원회)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 및 제11조)
- 비밀준수의 의무, 의견 청취 및 수당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부터 제15조)

### 4. 의견제출

- 「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기획감사실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전화 : 043)730-3055, FAX : 043)731-1984

- 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
### 5. 붙임

-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.
- 의견서 양식 1부.

##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옥천군의 주요정책 입안,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기능) 옥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·의결 및 자문을 위하여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군정 정책의 계획·수립에 관한 사항
2. 군정 정책의 검토·검증에 관한 사항
3. 군정 정책 및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
4. 군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
5.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
6.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당연직 위원 : 미래전략국장, 행정복지국장, 균형건설국장, 보건소장, 농업기술센터소장, 기획예산담당관
2. 위촉직 위원 :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
가. 대학교,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거나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
나.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의 전·현직 관계자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
다. 시민·사회 단체 등에 소속되어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사람  
라. 그 밖에 군정 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제7조(분과위원회의 설치)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일반행정·교육

2. 문화관광·체육

3. 보건·복지

4. 경제·농업·환경

5. 안전·건설·교통

제8조(분과위원회의 구성) ① 제7조의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의 분과위원회 위원(이하 “분과위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하며, 소관 분야의 전문성과 각 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장이 편성한다.

② 각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군수는 다양한 의견수렴 및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이 요구되는 안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각 분과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분과위원으로 추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 이

경우 임명 또는 위촉한 분과위원은 제3조제1항의 위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

1. 관계 부서 공무원

2.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

3. 관련 사회 단체·법인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

4. 관련 지역 주민
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분과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 종료 시 자동으로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제9조(분과위원회의 운영 등)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

3. 해당 분야의 담당관, 과·소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

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,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위원회”는 “분과위원회”로, “위원장”은 “분과위원장”으로 각각 본다.

제10조(특별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

에 대해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특별분과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.

1.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경우
2. 특정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경우
3. 특정 사업 또는 정책 결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심의·의결이 필요한 경우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1조(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② 군수는 의견수렴 및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을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명 또는 위촉한 특별분과위원은 제3조제1항의 위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

③ 특별분과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 종료 시 자동으로 해산한다.

④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2항과 제4항 및 제9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고, 그 밖의 사항은 특별분과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. 이 경우 “분과위원회”는 “특별분과위원회”로, “분과위원”은 “특별분과위원”으로, “분과위원장”은 “특별분과위원장”으로 각각 본다.

제12조(간사) ①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제2조, 제7조 및 제10조의 각 위원회별로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.

제13조(비밀준수의 의무) 모든 위원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이 아닌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.

제14조(의견 청취) 제2조, 제7조 및 제10조의 각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15조(수당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옥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」는 폐지한다.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**제28조(조례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(생략)

**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~ ③ (생략)

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### 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**제78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**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#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○ 조 례 명 :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 례 안	의 견